

의안 번호	제3517호
----------	--------

## 2025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4년 10월 7일 김포시장
- 나. 상 정 일 자 : 2024년 11월 4일
- 다. 의 결 일 자 : 2024년 11월 4일

### 2. 제안이유

-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에 대하여 자금 지원을 위한 ‘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’ 출연금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출연(출자)대상 :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
- 나. 출자·출연의 필요성
  - 경기침체 장기화 등으로 기업의 자금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, 원활한 자금 지원을 위한 출연금 편성으로 기업경영 애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
- 다. 출자·출연 주요 사업 내용
  - 사업기간 : 2025. 1월 ~ 12월
  - 사업대상 : 자금 부족으로 기업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
  - 지원내용 : 기금 재원으로 융자 지원, 대출금리의 일부 이차 보전
  - 주요사업 : 중소기업 융자 지원
    - ▶ 운전자금 : 인건비, 자재구입, 제품생산 등 기업 운영 자금

- ▶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: 시설설비, 사업장 건축, 연구개발비 등
- 지원한도
  - ▶ 운전자금 : 기업당 5억원 이내
  - ▶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: 기업당 30억원 이내
- ※ 2025년 경기도 출연금 요청액 : 1,118백만원

#### 4. 검토의견

- 본 안건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출연 여부를 연례적으로 동의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금액은 경기도에서 요청한 금액에 따라 결정되며 비용추계서상 작년 대비 일부 증액(24년: 861,000천원→25년: 1,118,000천원)된 것이 확인됨.
- 매년 우리 시에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출연하고 있는 만큼 관내 중소기업들이 기금에 따른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안내가 잘 이루어져야 할 것임.

#### ※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##### 제4조(기금의 조성)

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중앙행정기관, 경기도(이하 “도“라 한다) 및 시·군의 출연금
2. 기금운용 수익금
3.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4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 및 융자금 등
4. 그 밖의 수입금

② 도지사 및 시장·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.

제5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.

1. 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
2.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차차액의 보전
3.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
4. 특별보증 공급으로 발생한 손실금의 보전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의 출연금
5.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과 벤처투자조합 및 「산업발전법」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에의 투자참여를 위한 출연금
6.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건립을 위한 출연금
7. 그 밖에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6. 토론요지 : 생략
7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
8. 심사결과 : [원안가결](#)
9. 소수의견의 요지 : 생략
10. 주문사항 : 생략
11. 결과보고서 첨부서류 : 없음